

제198회 영등포구의회
2016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12. 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民 基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72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민원조정위원회 심의, 구성 (안 제2조, 안 제3조)
- 나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(안 제4조의2)
- 다. 위원의 해촉 (안 제4조의3)
- 라.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(안 제10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같은 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- 법(2015.8.11.개정) 및 영(2016.2.12.개정)이 개정 되어 위원회의 설치·운영근거가 영 제37조에서 법 제34조로 변경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(안 제1조)
-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토록 변경 하며 (안 제3조제2항)
- 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이해관계인·참고인·감정인·관련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회의일정 통지, 서면 의견 진술 등 규정을 보완하였음 (안 제10조제1항·제2항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,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(안 제4조의2, 안 제4조의3)

참 고 자 료

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4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장기 미해결 민원,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·방지 대책
2.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
3.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(실무기구의 심의결과)에 따른 재심의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8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,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, 관계부서의 장, 감사부서의 장,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·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